

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24. 10. 30 선고 2023가단288 판결 [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]

전 문

원고A

피고B

변론 종결2024. 10. 16.

판결 선고2024. 10. 30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 경북 청송군 C 전 1,037m²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청송등기소 1997. 3. 5. 접수 제1363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 중 같은 등기소 1997. 12. 3. 접수 제9751호로 마친 근저당권이전 부기등기에 의하여 D 명의로 일부 이전된 부분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: 별지 기재와 같다.

2. 자백간주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, 제150조 제3항, 제1항)

판사공병훈

별지